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기간 단축〉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34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정현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14.
3. 회부연월일 : 2025. 3.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시행령 제135조 및 시행규칙인 「사회복지요원 소집업무규정」 제49조를 근거로 보충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충역 판정자의 증가 및 사회복지요원 복무기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대기자의 경우 장기간 소집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대기기간은 개인의 학업·취업·사회진출 등에 큰 제약을 초래하며, 특히 대기기간 동안 병역 의무의 불확실성이 유지됨에 따라 대기자의 경력 개발 및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며, 병역 이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회복지요원의 대기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자들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요원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9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자 중 2년 이내에 사회복지요원으로 소집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인원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9항 후단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 ⑧ (생략)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지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u>보충역 편입연도</u>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⑨ ----- ----- ----- ----- ----- <u>보충역 편입연도부터</u> <u>의 대기기간</u> ----- ----- ----- ----- <u>. 이 경우 대기기간은 2</u> <u>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u> <u>하여야 한다.</u>
⑩ ~ ⑬ (생략)	⑩ ~ ⑬ (현행과 같음)

□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되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 후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함.¹⁾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보다 많은 경우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²⁾할 수 있는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요건은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전시근로역 편입 관련 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⑩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49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

①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는 제48조의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까지 소집통지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개정안은 현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요건 기간이(대기기간 3년 경과 시) 과도하다 판단하여

1) 「병역법」 제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2)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⑨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대기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장기의 소집 대기가 개인의 학업·사회진출 등에 제약을 초래하고, 경력 개발 및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같은 보충역인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36개월, 전문 연구요원은 36개월,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 대체역은 36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두고 있음.

<역종별 의무복무기간 및 형태 현황>

구 분		복무기간	복무형태
현역	육군, 해군, 공군	육군 : 18개월, 해군 : 20개월, 공군 : 21개월	합숙근무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비합숙근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36개월	비합숙근무
	전문연구요원	36개월	비합숙근무
	산업기능요원	34개월	비합숙근무
대체역	대체복무요원	36개월	합숙근무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기간을 ‘소집대기 3년 경과 후’에서 ‘소집대기 2년 이내’로 단축하면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의 경우 같은 보충역의 의무복무 기간보다도 짧은 기간의 ‘소집대기’만으로 병역 의무가 사실상

면제되어 역종 간 병역 이행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또한, 현행 제도로도 한해 11,000명 가량의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기자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근로역 편입 요건 기간을 단축할 경우 보충역이 전시근로역으로 변경 처분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이는 보충역 자원 감소로 이어져 예비군 동원 가용 인원의 축소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전력의 약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자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처분 인원	15,331명	14,485명	10,740명	10,556명	11,856명

- 국방부 및 병무청은 국민개병제 원칙에 입각해 징병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의 병역 제도 하에서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도는 최소한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7